

## < 회비 미납에 따른 회원 권리제한 및 회원정리에 대한 공지 >

1. 회원님의 건승하심과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**2017년 9월 8일에 개최된 2017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**에서 원활한 회무와 회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**회비미납 회원의 권리 제한 및 회원정리를 하기로 결의**한바 있습니다.

**\* 3년 초과 회비미납 회원 → 권리 제한**

(2018년 학회 학술행사부터 회원으로 등록불가)

**\* 5년 이상 회비미납 회원 → 학회 자료제공 중지**

(학회 관련자료(이메일, 우편물, 문자 등) 발송중지)

**\* 10년 이상 회비 미납 회원 → 탈퇴 처리**

**★단, 회비완납 시에는 회원권리 복구**

3. 이에 대상 회원님께서서는 **2017년 12월 1일(금)까지 연회비 미납분에 대한 납부**를 부탁드리며, 이후 납부되지 않은 3년 초과 회비미납 회원은 **2018년 1월 1일부터 제한됨**을 알려드립니다.  
또한 이후 회비 납부되지 않은 장기(10년 이상) 미납 회원은 탈퇴 의사표명으로 보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정리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.
4. 본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납부해 주신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사오니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5. 문의사항은 학회사무국(T.02-2273-3875/ F.02-2273-3871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**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 김영균**